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신한BNPP 퇴직연금코리아 롱숏 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BNPP 퇴직연금코리아 롱숏 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신한BNPP 퇴직연금코리아 롱숏 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shbnpp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17년 03월 0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7년 03월 1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 또는 매출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shbnppam.com),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차입 및 매도를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지만 차입한 주가가 예상과 달리 상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입거래에 따른 담보 제공 및 차입거래 수수료로 인하여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차입한 주식에 대해 대여기간 중 대여자의 환수요청(Recall)이 발생할 경우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차입이 여의치 못할 경우 차입매도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매도 주식 반환을 위한 주식 매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주식대차 거래에 대한 규제로 차입매도가 제한될 경우 당초 목표로 한 투자전략을 적절히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0.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외파생상품에의 투자에 있어서 롱숏(Long Short)전략을 주된 투자전략의 하나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매도한 주식(주가지수선물, 주식스왑 등 장내외파생상품 포함)의 가격이 상승하고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롱(매수)전략과 숏(매도)전략 모두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롱(매수)전략만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목차]

● 요약 정보 - 간이투자설명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요약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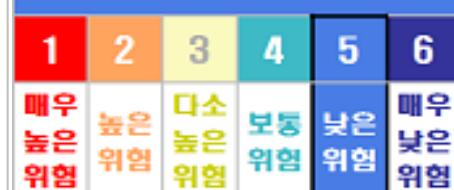
<간이투자설명서>

(2017.03.08)

신한BNPP 퇴직연금코리아 통수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AP085)

투자 위험 등급 5등급[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신한BNPP 퇴직연금코리아 통수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투자자 유의사항

-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 | | |
|-----------|---|--------|----------------------------------|
| 집합투자기구 특징 |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형(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 | |
| 집합투자업자 |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02-767-5777), | | |
| 모집(판매)기간 | <u>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u> | 모집(매출)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
| 효력발생일 | 2017년 03월 10일 | 존속 기간 |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shbnpp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 | |

| 구분 | 가입자격 | 선취판매수수료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
| 신한BNPP 퇴직연금코리아 통수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제한 없음 | - | - | 없음 |

| 구분 | 보수(연%) | | | | | |
|--|---|--------------|--------------|--------------|---------------|---------------|
| |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 신탁업자 | 일반사무관리 | 기타 | 합성총보수·비용 |
| 신한BNPP퇴직연 금코리아통수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u>0.270</u> | <u>0.400</u> | <u>0.030</u> | <u>0.015</u> | <u>0.0024</u> | <u>0.7217</u> |
| ※ 주석사항 | <p>(주1) 상기 보수의 지급시기는 매 3개월 후급입니다.</p> <p>(주2)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편드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주3)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간 : 2016.03.04 ~ 2017.03.03]</p> <p>(주4) 합성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두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주5)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피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은 합성 총보수·비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p> <p>(주6)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p> | | | | | |

| | |
|-------|---|
| 매입 방법 | (1) 17시 이전: 제2영업일(D+1)의 기준가격을 적용 (2) 17시 경과 후: 제3영업일(D+2)의 기준가격을 적용 |
| 가입 제한 | ※ 이 투자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증권(일괄)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환매 방법 | (1) 17시 이전: 제3영업일(D+2)의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D+3)에 지급 (2) 17시 경과 후: 제4영업일(D+3)의 기준가격으로 제5영업일(D+4)에 지급 |
| 기준가격 | (1)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기준가 | (2)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hbnppam.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

제2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I.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 1)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채권 및 주식에 각각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또한, 나머지 재산을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 등에 투자하여 해당 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모두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통수 전략을 구사하는 주식모투자신탁을 편입하며 현재 성과 비교를 위한 적합한 비교지수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투자신탁은 특정한 비교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모투자신탁 명칭 | 주요 투자전략 | 투자비중 |
|------------------------|---|---------|
| 신한BNPP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채권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와 이자 수익 및 자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100% 이하 |
| 신한BNPP코리아통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 | <p>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 매수(롱포지션)하고, 투자신탁재산의 20% 이내에서 주식 차입 매도(숏포지션)를 실시하며 다른 수익 기회 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주식관련장내외파생상품 매도(숏포지션)를 실행합니다. 숏포지션은 봉포지션 범위내에서 실행하며, 주식 순 포지션('주식매수' 포지션에서 '주식차입 매도+주식관련장내외파생상품매도' 포지션을 차감한 것으로 주식 시장에 대한 실질 노출도 의미)은 펀드 자산의 0~30%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p> <p>다만, 시장 상황이 급변하거나 매니저의 전략적 판단 등에 따라 순 주식 편입비율은 해당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p> | 40% 이하 |

3. 운용전문인력 (2017.02.28 현재)

(1) 신한BNPP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일임계약제외) |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 다른 운용 자산규모 |
| 서준식 | 1969 | 책임운용역 | 31개 | 14,168억원 |
| 서보민 | 1984 | 부책임운용역 | 33개 | 17,540억원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투자운용본부, 채권운용1팀에서 담당하며, 상기 운용역이 각각 책임운용역 및 부책임운용역입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채권투자운용본부, 채권운용1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한BNPP코리아통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일임계약제외) |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 다른 운용 자산규모 |
| 김영기 | 1969 | 책임운용역 | 1개 | 1,184억원 |
| 최두남 | 1981 | 부책임운용역 | 6개 | 2,244억원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투자운용본부, 주식운용1팀에서 담당하며, 상기 운용역이 각각 책임운용역 및 부책임운용역입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주식투자운용본부, 주식운용1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2017.02.28 현재/단위:%]

| 구분 | 설정일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 5년차 |
|--|------------|--------|--------|--------|--------|--------|
| 신한BNPP퇴직연금코리아 통숏40증권자투자신탁[채 권혼합] | 2014.03.04 | -0.02 | 3.17 | - | - | - |

(주1) 비교지수 : 없음

II.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 구분 | 주요 내용 |
|------------------|---|
|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 시장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당 증권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은 적은 원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렌대효과(레버리지)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 레버리지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장내외파생상품 또는 주식차입매도를 통한 투자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투자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매도포지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시 손실이 발생합니다. |
| 장외파생상품 관련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식관련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상대방 회사가 상환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신용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신탁에서 추구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 롱숏전략 위험 | 이 투자신탁이 매도한 주식(주가지수선물, 주식스왑 등 장내외파생상품 포함)의 가격이 상승하고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롱(매수)전략과 숏(매도)전략 모두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롱(매수)전략만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과세 관련 위험 |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법률 및 조세 관련 정책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소금과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포트폴리오 집중위 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비교적 적은 종목의 한정된 투자대상에 선별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험관리

(1) 위험관리

증권(일괄)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에 기재된 위험관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2.01%이며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 위험등급은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의 내부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1)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며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이 투자신탁의 재무정보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shbnpp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dis.kofia.or.kr)
-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hbnppam.com)
-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hbnppam.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칭(종류)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신한BNPP퇴직연금코리아통숏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AP085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형(혼합채권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판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법 : 기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지칭합니다.

2-1.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제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 청약할 수 있는 자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에 한한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주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hbnpp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11. 매입·판매 및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칭(종류)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신한BNPP퇴직연금코리아통숏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AP085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변경시행일 | 변경 사항 |
|------------|--|
| 2014.03.04 | 신규 설정 |
| 2014.08.14 | 운용전문인력 변경 * 신한BNPP코리아통숏모투자신탁[주식] - 변경 전 : 성창훈(책임운용역), 이선근(부책임운용역) - 변경 후 : 이선근(책임운용역), 없음(부책임운용역) |

| 변경시행일 | 변경 사항 |
|------------|--|
| 2015.01.29 | 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 전: 없음(부책임운용역) -변경 후: 서보민(부책임운용역) |
| 2016.04.27 | 세법개정사항 반영(매매평가차익 유보) |
| 2016.07.02 | 펀드위험등급체계개편(5등급->6등급)에 따른 위험등급변경 |
| 2016.07.11 | 운용전문인력 변경 - 변경 전 : 이선근(책임운용역), 없음(부책임운용역) - 변경 후 : 김영기(책임운용역), 최두남(부책임운용역) |
| 2016.08.08 | 판매 및 환매 기준시점 변경(15시 -> 17시) |
| 2017.03.10 | 펀드위험등급변경(4등급->5등급)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 | |
|----------|--|
| 회사명 |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8, 19층 (대표전화 : 02-767-5777, 홈페이지 : www.shbnppam.com) |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7.02.28. 현재)

가. 운용전문인력

(1) 신한BNPP 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일임계약제외)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 | |
| 서준식 | 1969 | 책임운 용역 | 31개 | 14,168억원 | -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 Temple Univ. MBA - 삼성생명 투자분석팀, 주식팀(94.08~98.09) - 삼성투신운용 채권운용부(98.10~02.08) - 한국투신운용 채권운용부(02.08~05.02)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채권운용2팀 (05.03~09.05)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상대가치운용팀장 (09.05~14.08)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채권투자운용본부 본 부장(14.08~현재) |
| 서보민 | 1984 | 부책임 운용역 | 33개 | 17,540억원 |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한국자산평가 외화채권평가팀 (10.05~11.08)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채권운용1팀(11.09~현 재) |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1팀, 채권투자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 운용역이 각각 책임운용역 및 부책임운용역입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채권운용1팀, 채권투자운용본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 주2)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두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한BNPP코리아통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일임계약제외)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 | |
| 김영기 | 1969 | 책임운 용역 | 1개 | 1,184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대한투신운용 투자전략팀, 주식운용팀(00.11 ~ 05.06) - 하나UBS자산운용 운용본부(05.07 ~ 07.06)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성장형운용팀장(07.06 ~ 13.09) - 하나UBS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13.09 ~ 15.06)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투자운용본부장(15.07 ~ 현재) |
| 최두남 | 1981 | 부책임 운용역 | 6개 | 2,244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및 동대학원 경제대학원 기업경제 졸업 -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06.01~07.06) - 푸르덴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07.07~09.08) - KB자산운용 주식운용3팀 (09.09~15.08)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운용1팀 (15.08~현재)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투자운용본부, 주식운용1팀에서 담당하며, 상기 운용역이 각각 책임운용역 및 부책임운용역입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주식투자운용본부, 주식운용1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두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2017.02.28. 현재): 해당사항 없음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1) 신한BNPP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책임운용역 | 운용 기간 |
|--------|--------------|
| 서준식 | 2006.01 ~ 현재 |
| 부책임운용역 | 운용 기간 |
| 서보민 | 2015.01 ~ 현재 |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입니다.

(2) 신한BNPP코리아통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책임운용역 | 운용 기간 |
|-------|-------------------|
| 성창훈 | 2014.02 ~ 2014.08 |
| 이선근 | 2014.08 ~ 2016.07 |
| 김영기 | 2016.07 ~ 현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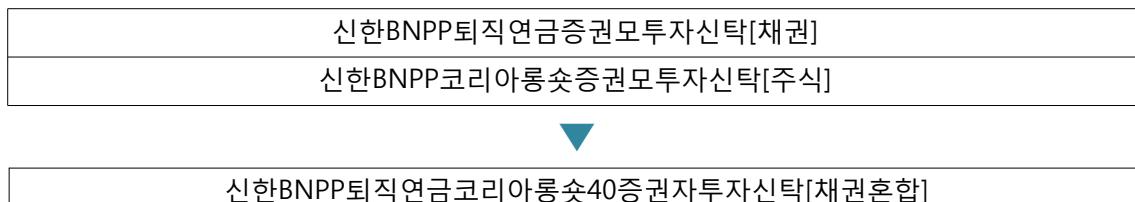
| 부책임운용역 | 운용 기간 |
|--------|-------------------|
| 이선근 | 2014.02 ~ 2014.08 |
| 최두남 | 2016.07 ~ 현재 |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형(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주)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등 주요 사항은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모투자신탁명 |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 |
|------------------------|---------------|---|
| 신한BNPP코리아롱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주요투자대상 | 국내 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 투자 |
| | 투자목적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p>-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 매수(롱포지션)하고, 투자신탁재산의 20% 이내에서 주식 차입 매도(숏포지션)를 실시하며 다른 수익 기회 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주식관련장내외파생상품 매도(숏포지션)를 실행합니다. 숏포지션은 롱포지션 범위내에서 실행하며, 주식 순 포지션(' 주식매수' 포지션에서 ' 주식차입매도+주식관련장내외파생상품매도' 포지션을 차감한 것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실질 노출도 의미)은 펀드 자산의 0~30%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p> <p>다만, 시장 상황이 급변하거나 매니저의 전략적 판단 등에 따라 순 주식 편입비율은 해당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p> |
| 신한BNPP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주요투자대상 | 채권 60% 이상 투자 |
| | 투자목적 |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채권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와 이자 수익 및 자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라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자산 유형 | 투자비율 (%) (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 주요 내용 |
|---|-------------------------------|--|
| 1. 집합투자증권 | 100% 이하 | 신한BNPP 퇴직연금증권 모투자신탁 [채권]의 수익증권 |
| | 40% 이하 | 신한BNPP 코리아 롱숏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의 수익증권 |
| | 50% 초과 | 상기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 10% 이하 |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
| 3.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 [2]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 |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 |
|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 |
|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 |
|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 |
| 마. 투자신탁재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1], [2]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신한BNPP 코리아 롱숏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 자산 유형 | 투자비율 (%) (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 주요 내용 |
|------------|-------------------------------|--|
| 1. 주식 | 60% 이상 |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과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
| 2. 채권 | 40% 이하 |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 3. 자산유동화증권 |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 4. 어음 등 |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

| | | |
|--|---------------|---|
| 4. 어음 등 | |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 5. 금리스왑거래 |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무증권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무증권 총액의 100% 이하. |
| 6. 집합투자증권 | 40% 이하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 7. 주식및채권관련 장내외파생상품 | |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외파생상품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로 한다 |
| 8. 증권의 대여 |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
| 9. 환매조건부 매도 |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 총액의 50% 이하 |
| 10. 증권의 차입 | 20%이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
| 11.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 | 법 시행령 제34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 1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 [2], [3], [4], [5], [6]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 |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 |
|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 |
|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 |
|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 |
| 마. 투자신탁재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1], [2], [3], [4], [5], [6]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 |

신한BNPP 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자산 유형 | 투자비율 (%) (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 주요 내용 |
|------------|----------------------------|--|
| 1. 채권 | 60% 이상 |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 2. 자산유동화증권 |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 3. 어음 등 |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 |

| | | |
|-----------------------|--------|---|
| 3. 어음 등 | | 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 4. 금리스왑거래 |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무증권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무증권 총액의 100% 이하. |
| 5. 집합투자증권 | 40% 이하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지분증권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
| 6. 채권관련 장내파생 상품 | |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
| 7. 증권의 대여 |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
| 8. 환매조건부 매도 |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 총액의 50% 이하 |
| 9. 증권의 차입 | 20% 이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
| 10. 단기대출 및 금융 기관에의 예치 | | 법 시행령 제34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 11. 신탁업자 고유재 산과의 거래 |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12. 기타 | | 위의 투자대상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 [2], [3], [4], [5]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마. 투자신탁재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1], [2], [3], [4], [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분 | 내용 | 적용 예외 |
|----------|--|-------|
| 이해관계인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 계열회사 증권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 | |

| | | |
|---------|--------------------|--|
| 계열회사 증권 | 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

[모투자신탁 투자제한]**신한BNPP코리아통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구분 | 내용 | 적용 예외 |
|----------|--|---------------|
| 이해관계인 투자 |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 |
| 동일종목 투자 |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p> <p>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p> <p>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 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 |
|---------|---|---------------|
| 동일종목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계열회사 증권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 파생상품 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파생상품 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
| 집합투자증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집합투자증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 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한도초과 |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의 차입, 동일종목 투자, 파생상품 투자, 집합투자증권 투자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p>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p> | |

신한BNPP 토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 구분 | 내용 | 적용 예외 |
|----|----|-------|
|----|----|-------|

| | | |
|----------|---|---------------|
| 이해관계인 투자 |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 |
| 동일종목 투자 |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p> <p>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매매, 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계열회사 증권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 파생상품 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파생상품 투자 |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

| | | |
|--------|--|---------------|
| 집합투자증권 |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집합투자증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증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한도초과 |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의 차입, 동일종목 투자, 파생상품 투자, 집합투자증권 투자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p>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p>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채권 및 주식에 각각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또한, 나머지 재산을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2) 상세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신한 BNPP 코리아 롱숏 증권 모두자신탁[주식]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 매수(롱포지션)하고, 투자신탁재산의 20% 이내에서 주식차입 매도(숏포지션)를 실시하며 다른 수익 기회 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주식관련장내외파생상품 매도(숏포지션)를 실행합니다. 숏포지션은 롱포지션 범위내에서 실행하며, 주식 순 포지션(' 주식매수' 포지션에서 ' 주식차입매도+주식관련장내외파생상품매도' 포지션을 차감한 것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실질 노출도 의미)은 펀드 자산의 0~30%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장 상황이 급변하거나 매니저의 전략적 판단 등에 따라 순 주식 편입비율은 해당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모투자신탁 |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
| 신한BNPP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 <p>-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채권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와 이자 수익 및 자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
| 신한BNPP코리아롱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 | <p>-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 매수(롱포지션)하고, 투자신탁재산의 20% 이내에서 주식 차입 매도(숏포지션)를 실시하며 다른 수익 기회 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주식관련장내외파생상품 매도(숏포지션)를 실행합니다. 숏포지션은 봉포지션 범위내에서 실행하며, 주식 순 포지션('주식매수' 포지션에서 '주식차입매도+주식 관련장내외파생상품매도' 포지션을 차감한 것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실질 노출도 의미)은 펀드 자산의 0~30%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p> <p>다만, 시장 상황이 급변하거나 매니저의 전략적 판단 등에 따라 순 주식 편입비율은 해당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p> |

(3) 위험관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시장위험(Market Risk),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방법을 실행합니다.

- 사전적으로 검증된 투자 Universe(종목후보군) 종목 투자여부 점검
- 펀드별 추적오차(Tracking Error)점검
- 종목별 보유한도준수여부 점검
- 펀드별 유동성 점검 등

(4)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주식모투자신탁을 편입하며 현재 성과 비교를 위한 적합한 비교지수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투자신탁은 특정한 비교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채권 및 주식에 각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주된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에 대한 기술이며, 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가. 일반위험

| 구분 | 주요 내용 |
|----------|--|
| 원본 손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 |
|----------------------|---|
| 원본 손실 위험 |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 과세위험 |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 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자산의 예 :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 수익 등 *비과세 대상 자산의 예: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
| 시장위험 |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당 증권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증권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증권가격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은 적은 원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 구분 | 주요 내용 |
|---------------------|--|
|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 관련 거래상대방 또는 보유하는 국내외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주식차입거래 관련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차입 및 매도를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지만 차입한 주가가 예상과 달리 상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입거래에 따른 담보 제공 및 차입거래 수수료로 인하여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차입한 주식에 대해 대여기간 중 대여자의 환수요청(Recall)이 발생할 경우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차입이 여의치 못할 경우 차입매도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매도 주식 반환을 위한 주식 매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주식대차거래에 대한 규제로 차입매도가 제한될 경우 당초 목표로 한 투자전략을 적절히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 레버리지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장내외파생상품 또는 주식차입매도를 통한 투자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투자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매도포지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시 손실이 발생합니다. |
| 장외파생상품 관련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식관련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상대방 회사가 상환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신용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등 투자신탁에서 추구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 | |
|-------------------|--|
| 롱숏전략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외파생상품에의 투자에 있어서 롱숏(Long Short) 전략을 주된 투자전략의 하나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매도한 주식(주가지수선물, 주식스왑 등 장내외파생상품 포함)의 가격이 상승하고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롱(매수)전략과 숏(매도)전략 모두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롱(매수)전략만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과세 관련 위험 |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법률 및 조세 관련 정책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소급과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적 적은 종목의 한정된 투자대상에 선별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ETF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의 괴리위험, 설정/환매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 구분 | 주요 내용 |
|------------------------|---|
| 유동성 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평가된 주식들의 경우 유동성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유동성도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에 응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이러한 낮은 유동성은 단기간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
| 환매 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고 일정기간의 환매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기간 동안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환매연기위험 |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 혹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기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등. |
|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 |

| | |
|--------------------------|---|
|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 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대량환매위험 |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펀드규모위험 |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을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2.01%이며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투자신탁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하여 이를 상회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고, 표준편차 값이 하위 등급의 상한치보다 낮은 경우 등급을 하향하게 됩니다. 단, 실제 과거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의 변동은 상품에 내재되어있는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 위험요인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변경내역>

| 투자위험등급 | 기간 | 변경사유 |
|--------|-----------------|------------------------------|
| 3 등급 | 2014.03~2016.06 | |
| 4 등급 | 2016.07~2017.03 |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적용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
| 5 등급 | 2017.03~현재 | 실제 수익률 변동성 축소에 따라 위험등급 하향 |

※ 실제 수익률 변동성의 결과계산에 따라 부여되는 위험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급 | 1(고위험) | 2 | 3 | 4 | 5 | 6(저위험) |
|-------------------|--------|-------|-------|-------|------|--------|
| 수익률 변동성 (표준편차) | 25%초과 | 25%이하 | 15%이하 | 10%이하 | 5%이하 | 0.5%이하 |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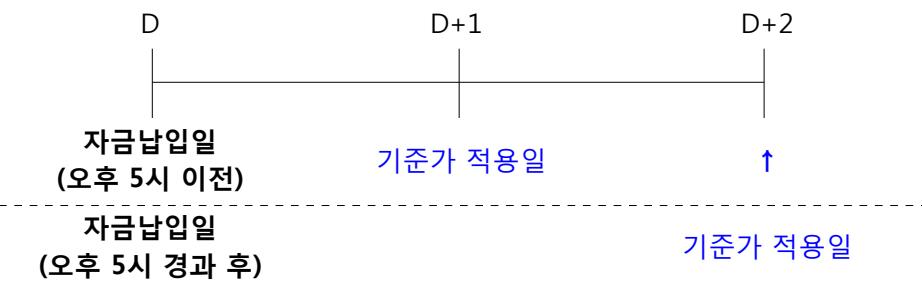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투자신탁의 가입제한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에 한합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A.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B. 17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각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 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C.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수 청구 : 집합투자업자는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할 사유가 없는 한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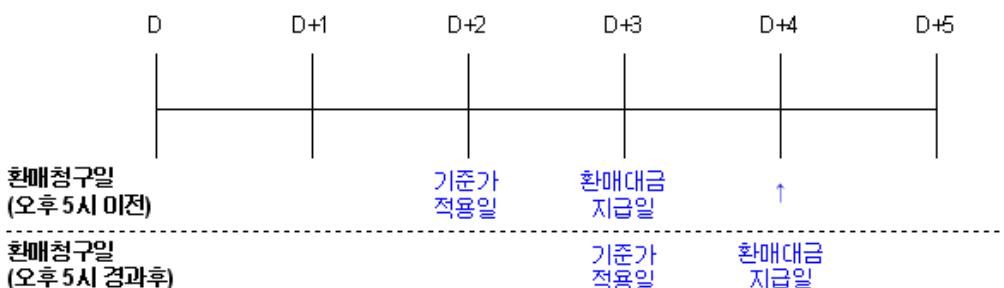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직접 환매하거나, 판매회사가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환매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A.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B. 17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각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 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C.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 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자금으로 환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날에 모두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경과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 전일(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3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그밖에 ①~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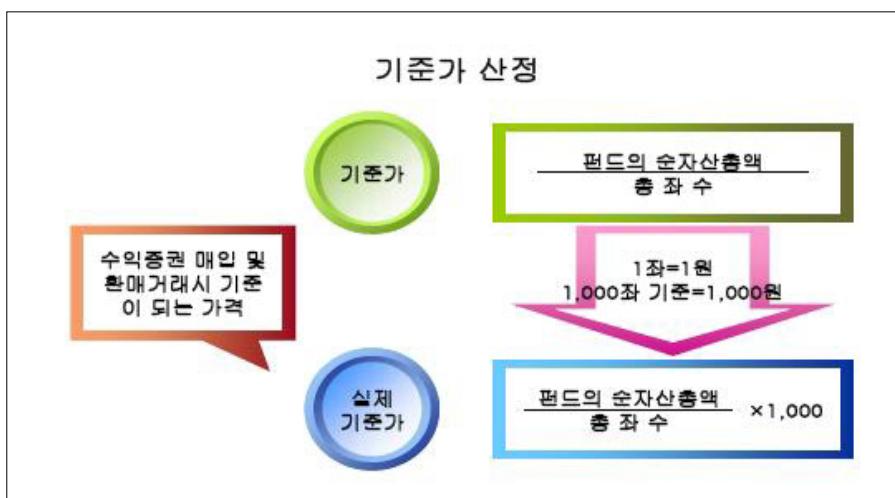
(7)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
|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중에도 이자수익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hbnppam.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 구분 | 평가원칙 |
|------|---|
| 시가 | <p>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 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공정가액 | <p>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환율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시가(공정가액) 평가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구분 | 평가방법 |
|----|---|
| 1 |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2 |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외화표시자산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외국 채권평가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3 |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
| 4 | 장외파생상품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공정가액 |
| 5 |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외화표시자산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외국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
| 6 | 비상장채권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
| 7 |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 | | |
|---|---------------------------|--|
| 8 |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9 | 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한다.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2)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분 |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 | |
|------------------------------------|----------------|---------|-------|
| | 선취판매수수료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 지급시기 | 매입시 | 환매시 | 환매시 |
| 신한BNPP퇴직연금코리아롱숏 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 | - | 없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 지급비율 (연간%) | | | | | | | |
|--|-------------------|--------------|--------------|--------------|-----------|---------------|-----------------|------------|
| | 집합투자 업자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신탁업자 보수 | 일반사무 보수 | 기타 비용 | 총보수 비율 | 합성 총보수 비율 | 증권거래 비용 |
| 신한BNPP퇴직연금코리아 롱숏40증권자투자신탁[채 권혼합] | <u>0.270</u> | <u>0.400</u> | <u>0.030</u> | <u>0.015</u> | 0.0024 | <u>0.7174</u> | <u>0.7217</u> | 0.3489 |
| 지급시기 |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 | | | 사유 발생시 | - | - | 사유 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

(주2)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 매매수수료,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 거래비용(repo 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간 : 2016.03.04 ~ 2017.03.03]

(주4)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두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

(단위:천 원)

| 투자기간 | 1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 신한BNPP 퇴직연금코리아 롱숏 40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 | 74 | 232 | 404 | 902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보수 및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선취판매 수수료 포함, 단, 후취 판매수수료는 제외).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수익률은 5%, 총보수 및 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자투자신탁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비용 반영을 위해 합성 총보수 및 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분배 유보는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이익금의 분배 유보로 인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대 효과: 투자신탁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 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과세시점 이연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와 같이 과세시점 이연의 효과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통하여 과세시점을 확정한 후 수익증권을 추가 매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방법은 각 판매회사의 수익증권저축약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각 판매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A. 세액공제(2015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

B. 과세 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

C.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 참조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대상 금액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회계감사법인 | 감사의견 |
|--------------------------------|--------|------|
| 제 3 기(2016.03.04 ~ 2017.03.03) | 회계감사면제 | 해당없음 |
| 제 2 기(2015.03.04 ~ 2016.03.03) | 회계감사면제 | 해당없음 |
| 제 1 기(2014.03.04 ~ 2015.03.03) | 회계감사면제 | 해당없음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 항목 | 통합 대차대조표 | | |
|----------|-------------------------|-------------------------|-------------------------|
| | 제 3 기 (2017.03.03) | 제 2 기 (2016.03.03) | 제 1 기 (2015.03.03) |
| 운용자산 | 4,016,297,056 | 4,144,581,595 | 2,452,146,000 |
| 증권 | 3,863,467,392 | 3,932,005,172 | 2,389,477,508 |
| 파생상품 | 0 | 0 | 0 |
| 부동산/실물자산 | 0 | 0 | 0 |
| 현금 및 예치금 | 152,829,664 | 212,576,423 | 62,668,492 |
| 기타 운용자산 | 0 | 0 | 0 |
| 기타자산 | 2,693,623 | 16,177 | 7,385 |
| 자산총계 | 4,018,990,679 | 4,144,597,772 | 2,452,153,385 |
| 운용부채 | 0 | 0 | 0 |
| 기타부채 | 6,940,418 | 5,031,295 | 2,883,116 |
| 부채총계 | 6,940,418 | 5,031,295 | 2,883,116 |
| 원본 | 4,018,473,852 | 4,009,968,412 | 2,320,466,488 |
| 수익조정금 | 957,116 | 40,665,305 | 81,625,968 |
| 이익잉여금 | -7,380,707 | 88,932,760 | 47,177,813 |
| 자본총계 | 4,012,050,261 | 4,139,566,477 | 2,449,270,269 |

통합 손익계산서

| 항목 | 제 3 기 | 제 2 기 | 제 1 기 |
|------------|---------------------------|---------------------------|---------------------------|
| | (2016.03.04-2017.03.03) | (2015.03.04-2016.03.03) | (2014.03.04-2015.03.03) |
| 운용수익 | 5,674,171 | 111,904,636 | 55,266,792 |
| 이자수익 | 1,538,379 | 961,606 | 395,296 |
| 배당수익 | 0 | 0 | 0 |
| 매매/평가차익(손) | 4,135,792 | 110,943,030 | 54,871,496 |
| 기타수익 | 0 | 0 | 0 |
| 운용비용 | 29,503,404 | 22,415,058 | 7,897,678 |
| 관련회사 보수 | 29,503,404 | 22,415,058 | 7,897,678 |
| 매매수수료 | 0 | 0 | 0 |
| 기타비용 | 735,339 | 556,818 | 191,301 |
| 당기순이익 | -24,564,572 | 88,932,760 | 47,177,813 |
| 매매회전율 | 0 | 0 | 0 |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위 재무재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 3) "통합재무정보상의 대차대조표"와 "통합감사(BSPL)상의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4) "통합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통합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5)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통합) 대차대조표

투자신탁명 : 퇴직연금코리아 롱숏40자[채권혼합] [단위: 원]

| 과 목 | 제3기(2017.03.03) | | 제2기(2016.03.03) | | 제1기(2015.03.03) | |
|----------------------------|-----------------|---------------|-----------------|---------------|-----------------|---------------|
| | 금 | 액 | 금 | 액 | 금 | 액 |
| 자 산 | | | | | | |
| 운용자산 | | | | | | |
| 현금및예치금 | | | | |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52,829,664 | | 152,829,664 | | 212,576,423 | |
| 2. 예치금 | | | 0 | | 0 | |
| 3. 증거금 | | | | | | |
| 대출채권 | | | | | | |
| 1. 물론 | | | | |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 | | | | |
| 3. 매입어음 | | | | | | |
| 4. 대출금 | | | | | | |
| 유가증권 | | | | | | |
| 1. 지분증권 | | | | | | |
| 2. 채무증권 | | | | | | |
| 3. 수익증권 | | | | | | |
| 4. 기타유가증권 | | | | | | |
| 파생상품 | | | | | | |
| 1. 파생상품 | | | | | | |
| 부동산과 실물자산 | | | | | | |
| 1. 건물 | | | | | | |
| 2. 토지 | | | | | | |
| 3. 농산물 | | | | | | |
| 4. 축산물 | | | | | | |
| 기타운용자산 | | | | | | |
| 1. 임차권 | | | | | | |
| 2. 전세권 | | | | | | |
| 기타자산 | | | | | | |
|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 | | | | | |
| 2. 정산미수금 | | | | | | |
| 3. 미수이자 | | | | | | |
| 4. 미수배당금 | | | | | | |
| 5. 기타미수입금 | | | | | | |
| 6. 기타자산 | | | | | | |
| 7. 수익증권청약금 | | | | | | |
| 자 산 총 계 | | 4,018,990,679 | | | 4,144,597,772 | |
| 부 채 | | | | | | 2,452,153,385 |
| 운용부채 | | | 0 | | 0 | |
| 1. 옵션매도 | | | | |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 | | | |
| 기타부채 | | | | | | |
|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 | | 6,940,418 | | 5,031,295 | |
| 2. 정산미지급금 | | | | | | |
| 3. 해지미지급금 | | | | | | |
| 4. 수수료미지급금 | | | | | | |
| 5. 기타미지급금 | | | | | | |
| 6. 기타부채 | | | | | | |
| 부 채 총 계 | | 6,940,418 | | | 5,031,295 | |
| 자 본 | | | | | | |
| 1. 원 본 | | 4,018,473,852 | | | | |
|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 | | | 4,009,968,412 | | 2,320,466,488 |
| 3. 이월잉여금 | | -6,423,591 | | | | |
| (발행좌수 당기): 4,018,473,852 좌 | | | 이익잉여금 | -7,380,707 | | 128,803,781 |
| 전기: 4,009,968,412 좌 | | | 수익조정금 | 957,116 | | |
| 전전기: 2,320,466,488 좌) | | | | | 88,932,760 | 47,177,813 |
| (기준가격 당기): 998.40 원 | | | | | 40,665,305 | 81,625,968 |
| 전기: 1,000.00 원 | | | | | | |
| 전전기: 1,000.00 원) | | | | | | |
| 자 본 총 계 | | 4,012,050,261 | | | 4,139,566,477 |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 4,018,990,679 | | | 4,144,597,772 | |
| | | | | | | 2,452,153,385 |

다. (통합)손익계산서

투자신탁명 : 퇴직연금코리아 롱숏40자[채권혼합]

[단위:원]

| 과 목 | 제3기(2016.03.04-2017.03.03) | | 제27기(2015.03.04-2016.03.03) | | 제1기(2014.03.04-2015.03.03) | |
|-------------------|----------------------------|--------------|-----------------------------|-------------|----------------------------|-------------|
| | 금 액 | | 금 액 | | 금 액 | |
| 운 용 수 익 | | | | | | |
| 1. 투자수익 | | 1,538,379 | | 961,606 | | 395,296 |
| 1. 이자수익 | 1,538,379 | | 961,606 | | 395,296 | |
| 2. 배당금수익 | | | | | | |
| 3. 수수료수익 | | | | | | |
| 4. 임대료수익 | | | | | | |
|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 | 23,781,811 | | 116,574,171 | | 57,734,393 |
| 1. 지분증권매매차익 | | | | |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 | | | | | |
|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 | | | | | |
| 4. 지분증권평가차익 | 17,183,865 | | 0 | | 0 | |
| 5. 외환거래/평가차익 | | | | | | |
|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 | | | | | |
| 7. 기타거래차익 | 6,597,946 | | 116,574,171 | | 57,734,393 | |
|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 | 2,462,154 | | 5,631,141 | | 2,862,897 |
| 1. 지분증권매매차손 | | | | |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 | | | | | |
|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 | | | | | |
| 4. 지분증권평가차손 | 0 | | 0 | | 0 | |
| 5. 외환거래/평가차손 | | | | | | |
| 6. 대손상각비 | | | | | | |
|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 | | | | | |
| 8. 기타거래손실 | 2,462,154 | | 5,631,141 | | 2,862,897 | |
| 운 용 비 용 | | 30,238,743 | | 22,971,876 | | 8,088,979 |
| 1. 운용수수료 | 11,379,811 | | 8,645,730 | | 3,046,222 | |
| 2. 판매수수료 | 16,859,278 | | 12,808,798 | | 4,513,128 | |
| 3. 수탁수수료 | 1,264,315 | | 960,530 | | 338,328 | |
| 4. 투자자문수수료 | | | | | | |
| 5. 임대자산관련비용 | | | | | | |
| 6. 기타비용 | 735,339 | | 556,818 | | 191,301 | |
|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 -7,380,707 | | 88,932,760 | | 47,177,813 |
|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 | -0.001836694 | | 0.02217792 | | 0.020331176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억좌, 억원]

| 종류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 신한BNPP퇴직연금코리아롱숏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2014.03.04 - 2015.03.03 | 0 | 0 | 26 | 27 | 3 | 3 | 23 | 24 |
| | 2015.03.04 - 2016.03.03 | 23 | 23 | 26 | 26 | 9 | 9 | 40 | 41 |
| | 2016.03.04 - 2017.03.03 | 40 | 40 | 8 | 8 | 8 | 8 | 40 | 40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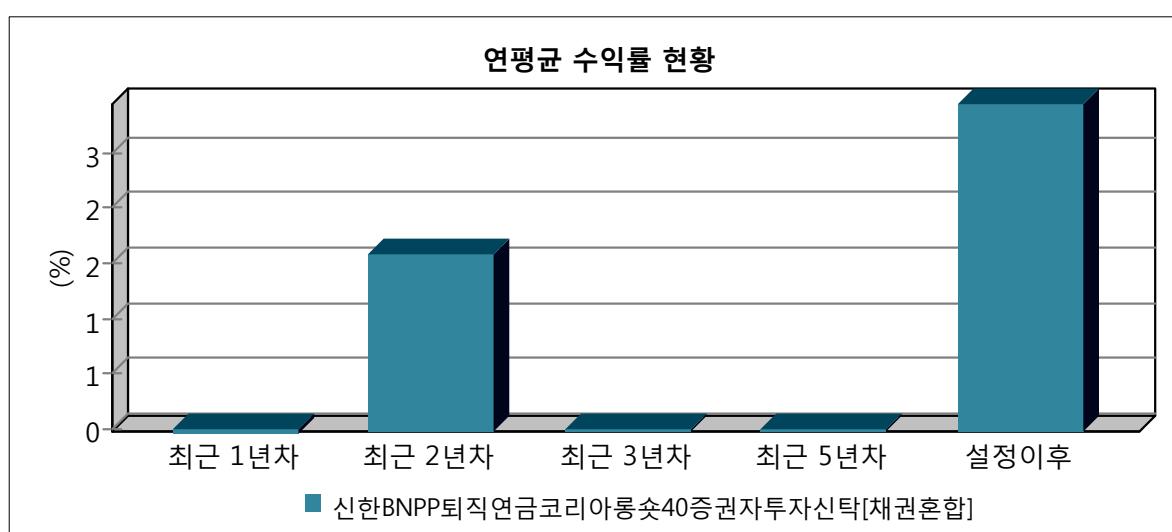
[2017.02.28현재/단위:%]

| 구분 | 설정일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5년차 | 설정일 이후 |
|--------------------------------|------------|--------|--------|--------|--------|--------|
| 신한BNPP퇴직연금코리아롱숏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2014.03.04 | -0.02 | 1.57 | - | - | 2.94 |

(주1) 비교지수 : 없음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2017.02.28현재/단위:%]

| 구분 | 설정일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 5년차 |
|--------------------------------|------------|--------|--------|--------|--------|--------|
| 신한BNPP퇴직연금코리아롱숏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2014.03.04 | -0.02 | 3.17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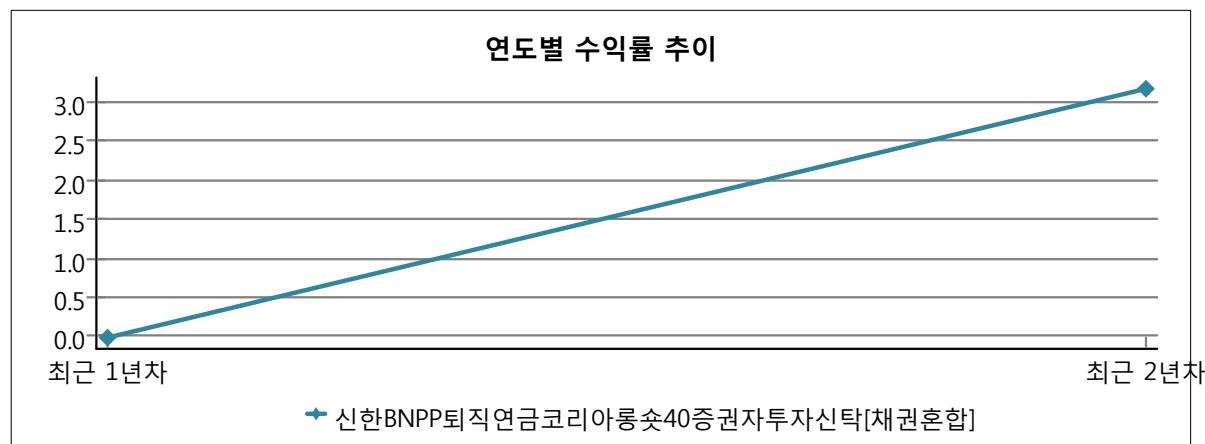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 없음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단순 누적 수익률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의 변동추이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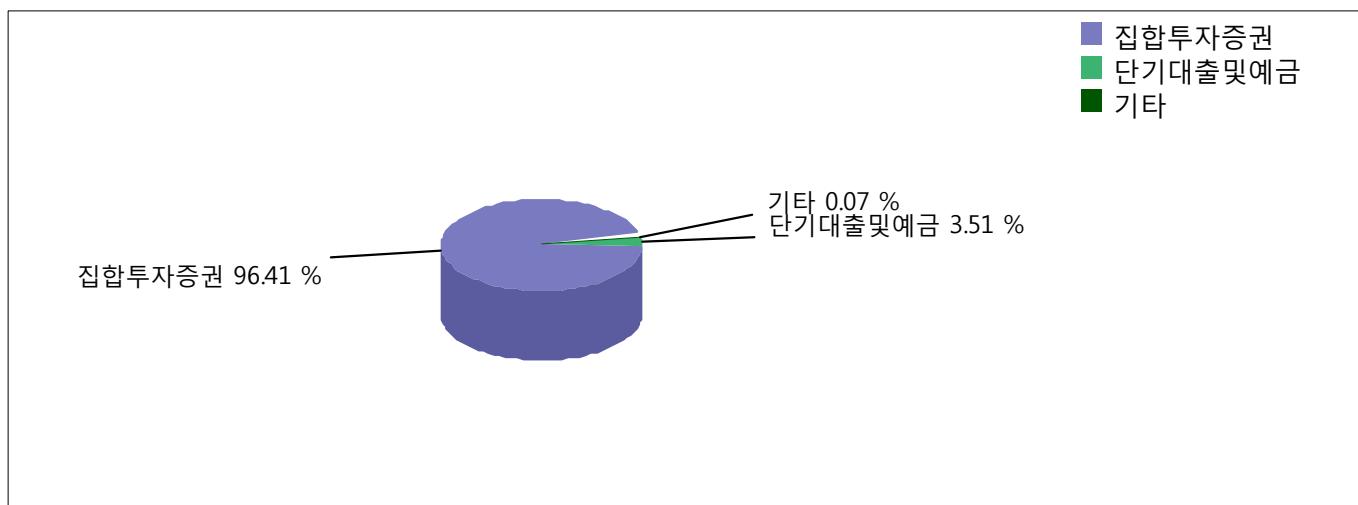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설정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기간 | 수익률 기재 방식 |
|-------------------|--|
| 6개월 미만 | 기재하지 않습니다. |
| 6개월 초과 - 1년 미만 |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기간 수익률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 연환산수익률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자투자신탁)



[2017.02.28 현재 / 단위 : 억원, %]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 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 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 자산 | 기타 | | | |
| KRW | 0 (0.00) | 0 (0.00) | 0 (0.00) | 39 (96.41)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1 (3.51) | 0 (0.07) | 40 (100.00) |
| 합계 | 0 (0.00) | 0 (0.00) | 0 (0.00) | 39 (96.41)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1 (3.51) | 0 (0.07) | 40 (100.00) |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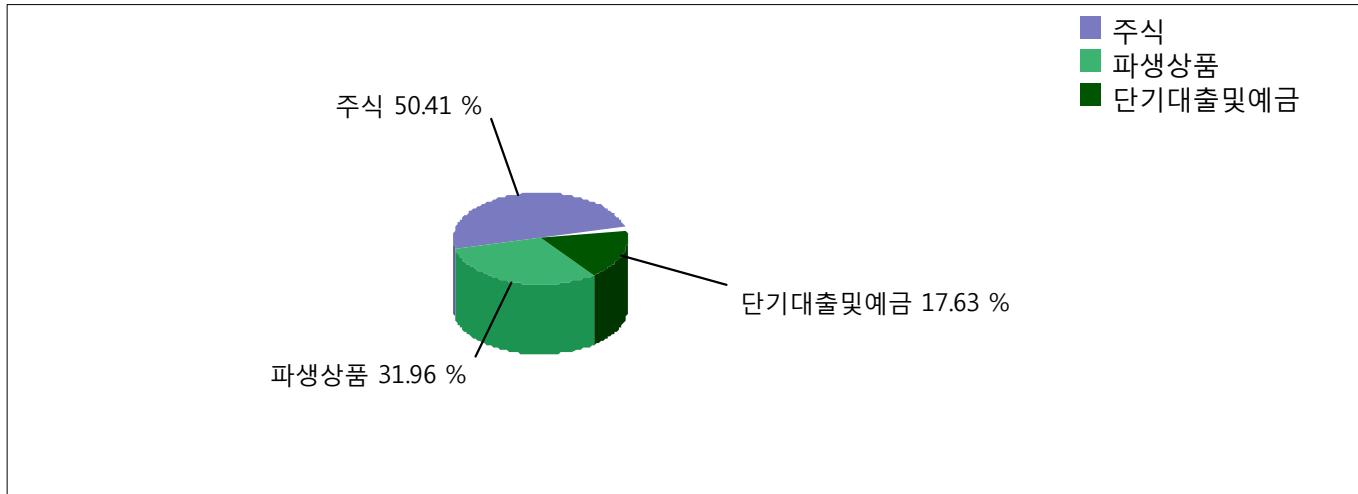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현황

[신한BNPP코리아롱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 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 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 자산 | 기타 | | | |
| KRW | 26 (71.13) | 0 (0.00) | 0 (0.00) | 0 (0.00) | 16 (45.09)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9 (24.87) | -16 (-44.24) | 36 (100.00) |
| 합계 | 26 (71.13) | 0 (0.00) | 0 (0.00) | 0 (0.00) | 16 (45.09)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9 (24.87) | -16 (-44.24) | 36 (100.00) |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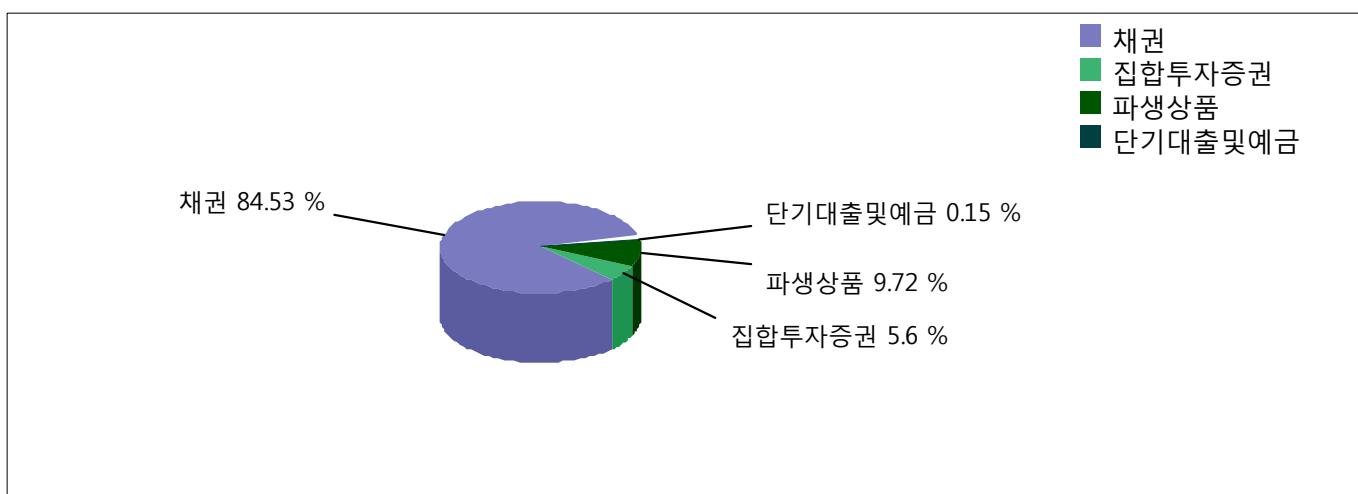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현황

[신한BNPP 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17.02.28 현재 / 단위 : 억원, %]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 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 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 자산 | 기타 | | | |
| KRW | 0 (0.00) | 875 (93.62) | 0 (0.00) | 58 (6.20) | 101 (10.76)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2 (0.17) | -101 (-10.76) | 934 (100.00) |
| 합계 | 0 (0.00) | 875 (93.62) | 0 (0.00) | 58 (6.20) | 101 (10.76)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2 (0.17) | -101 (-10.76) | 934 (1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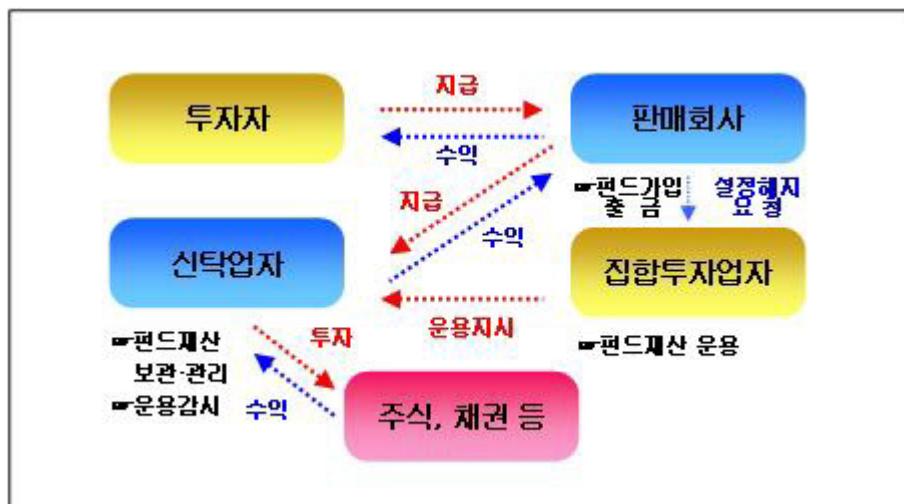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 | |
|----------|---|
| 회사명 |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8, 19층 (대표전화 : 02-767-5777, 홈페이지 : www.shbnppam.com) |
| 회사연혁 | 2009.01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 출범 (신한 비엔피 파리바 투자신탁운용(주)과 SH자산운용(주)의 합병) 2008.09 신한금융지주그룹, 비엔피 파리바 금융그룹 합작운용사 출범을 위한 MOU체결 |
| 자본금 | 754억원 |
| 주요주주현황 | 신한금융지주(65%), 비엔피 파리바 그룹(35%) |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대차대조표]

| 구분 | 제21기 2016년12월말 | 제20기 2015년12월말 |
|------------|-------------------|-------------------|
| 현금및예치금 | 125,954 | 122,809 |
| 유가증권 | 12,540 | 25,977 |
| 대출채권 | 2,564 | 2,467 |
| 기타자산 | 17,811 | 16,573 |
| 유형자산 | 2,292 | 2,337 |
| 자산총계 | 161,161 | 170,164 |
| 기타부채 | 13,354 | 15,357 |
| 부채총계 | 13,354 | 15,357 |
| 자본금 | 75,374 | 75,374 |
| 자본잉여금 | 29,177 | 29,177 |
| 자본조정 | -34 | 3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8 | 6 |
| 이익잉여금(결손금) | 43,223 | 50,221 |
| 자본총계 | 147,807 | 154,808 |
| 부채와자본총계 | 161,161 | 170,16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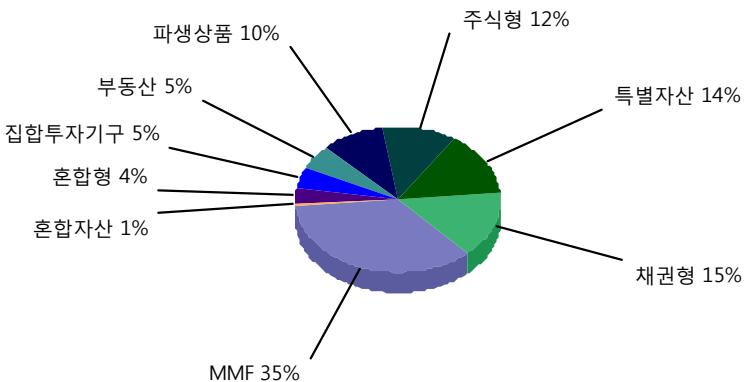
[요약손익계산서]

| 구분 | 제21기 (16.01.01- 16.12.31) | 제20기 (15.01.01- 15.12.31) |
|----------------|---------------------------------|---------------------------------|
| 영업수익 | 69,834 | 83,718 |
| 영업비용 | 51,010 | 51,810 |
| 영업외수익 | 1,079 | 780 |
| 영업외비용 | 1,079 | 1,726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18,825 | 30,962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4,523 | 7,309 |
| 계속사업이익(손실) | 14,302 | 23,653 |
| 중단사업이익(손실) | | |
| 당기순이익(손실) | 14,302 | 23,653 |

라. 운용자산 규모 (2017.02.28 현재 / 단위 : 억원)(일임자산제외)

| 구분 | 증권 | | | | | 부동산 | 특별자산 | 혼합자산 | MMF | 총계 |
|-----|--------|-------|--------|--------|--------|--------|--------|-------|--------|---------|
|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 | | | | |
| 수탁고 | 27,769 | 8,535 | 35,893 | 11,045 | 24,383 | 12,825 | 34,350 | 1,264 | 85,227 | 241,292 |

유형별 운용자산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중구 칠판로37 (대표전화 : 02) 2004-0000) |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sbc.co.kr |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신한 아이타스 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대표전화 : 2180-0400) |
| 인터넷 홈페이지 | www.shinhanaitas.com |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주소 | 연락처 | 인터넷 홈페이지 |
|------------|--------------------|--------------|--|
| 한국자산평가 | 서울 종로구 율곡로 88 | 02-399-3350 | www.koreaap.com |
| 나이스피앤아이(주)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02-398-3900 | www.nicepni.co.kr |
| KIS채권평가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 www.bond.co.kr |
| 에프앤자산평가(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 02-721-5300 | www.fnpricing.com |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에프앤자산평가(주)의 경우 국내채권(CD, CP)만 평가 및 제공함)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 투자신탁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 총회의 목적이 자 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증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미달하는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 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규약 제5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환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추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가입계좌 별로 상환대금을 지급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등.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동 시행령 제3항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 5)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 각호의 사항 등

다만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법 시행령 제217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자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hbnppam.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및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내용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2016.03.01 ~ 2017.02.28)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2016.03.01 ~ 2017.02.28)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증개업자의 선정기준

| 구분 | 증개회사의 선정기준 |
|----------------|--|
|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 <p>집합투자업자인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의 증개회사 선정기준입니다. 분기(필요시 변경가능)별로 내부 증개기관위원회(Broker Committee)에서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증개회사를 선정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서치의 양과 질- 새로운 섹터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업무범위- 거래 실행력- 투자자의 최우선 가치- 비용/수수료 구조- 거래체결의 질과 완벽함- 신용과 평판의 질- 증개기관과 집합투자업자의 IT/통신 연결- 증개기관의 내부 준법감시 절차 <p>선택된 증개회사들의 거래량 분배는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분합니다.</p> |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 가. 신탁업자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추가서류]

1. 간이투자설명서
2. 투자설명서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 용 어 | 내 용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집합투자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투자회사 |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수익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폐쇄형 |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단위형 |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
| 모자형 |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 종류형 |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자본이득 |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
| 배당소득 |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신탁보수 |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성과보수 |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판매수수료 | 투자가 펀드 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리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
| 선취판매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후취판매수수료 | 펀드 환매 시 투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수수료 |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

| | |
|----------------|--|
| | 펀드에 귀속됩니다. |
| 설정 |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신규 설정과 추가 설정이 있습니다.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 신탁 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 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 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
| 환매 |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투자자가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수익자총회 | 신탁 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 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 선물환거래 |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은 거래를 말합니다. |
| 금리스왑 |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신주인수권부 사채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
|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 주식워런트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
| 환매조건부 매수/매도 |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